

제1회 금융분야 국제개발협력 연구회

| 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 09:00 ~ 12:15

| 장소 |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층 33326호 교수세미나실

| 주관 | 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

| 주최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 후원 | One Asia 재단

행사배경 및 일정

I. 배경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한국의 국제적 책무와 역할이 날로 커지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원조활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저성장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금융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외 CSR 활동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사례로 흔히 알려진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그대로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보다, 반성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는 권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와 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에서는 일차로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II. 행사일정 (장소 : 성균관대 경영관 3층 33326호 교수세미나실)

09:00 - 09:05	개회사	정홍주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장, 국제금융소비자학회장)
09:05 - 09:10	축사	김통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전 성대 ODA 연구소장)
09:10 - 09:30	기조강연 '한국 금융사 개관'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09:30 - 10:45	제1주제 : 한국의 보험업 발전사와 개도국 공유 적합성	좌장 : 이원돈(대구대 금융보험학과, 한국보험학회장) 지정 토론자 : 최병호(전 보건사회연구원장), 박흥찬(금융감독원) 박소정(서울대 경영학과), 이재섭(공무원연금공단) 임금자(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윤정혜(인하대 소비자학과), 김창섭(EY 한영회계법인)
11:00 - 12:15	제2주제 : 한국의 은행업 발전사와 개도국 공유 적합성	좌장 : 이재웅(성균관대 명예교수, 전 금융학회장) 지정 토론자 :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김성숙(계명대 소비자학과), 최철(숙명여대 소비자학과) 허유경(버지니아대 법전문), 고동원(성균관대 법전문)

※ 이사 간담회 (13:15 ~ 15:00) - 성균관대 경영관 3층 33326호

※ 산학 협의회 (15:00 ~ 17:00) - 성균관대 경영관 5층 33503호

한국금융 70년: 회고와 반성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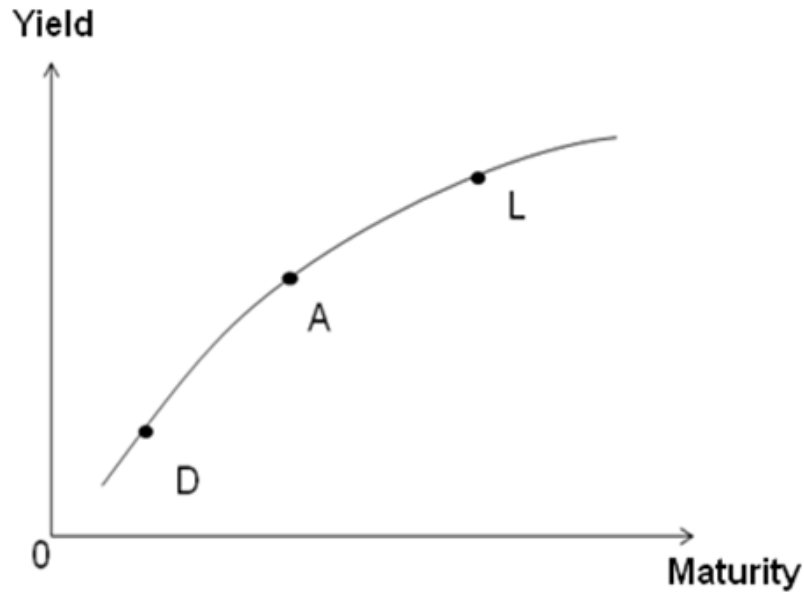
금융의 속성

금융의 속성에 비친 한국금융

회고와 반성

금융의 속성

- 자금중개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 위험에 따르는 보상
 - 신용위험, 만기불일치위험, 통화불일치위험, 유동성위험, 자금조달위험, 법적위험, ...
- Externalities



금융의 속성 2

- 경로의존적, 불가역적
 - 시장선택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
- 시장실패
 - 시장의 자율조정 메커니즘과 자기규율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
 - 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 금융위기
 - 시장의 불완전성을 반영하나 동시에 시장의 자율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 시장의 형벌

금융과 경제

- 산업혁명은 금융혁신을 기다렸다 (JR Hicks)
- 금융시스템과 현대자본주의 (A. Chandler, Scale and Scope)
 - 자본시장 vs.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 금융법체계와 경제성장
 -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경제성장
- 금융과 aging
 -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금융

금융의 속성

금융의 속성에 비친 한국금융

회고와 반성

한국금융 70년의 key words

- 일제 하 정교한 금융시스템이 구축
 - 구축된 금융시스템은 전쟁수행을 위한 자본동원창구로 변질
- 해방 후 꺾데기만 남은 한국경제에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 시작되었으며 고성장기에도 지속
- 각종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설립과 1기관 1법
- 금융개방, 자유화에 뒤이은 아시아금융위기 (AFC)
- 전면적 자본개방에 뒤이은 글로벌금융위기 (GFC)
- 자본흐름관리정책을 강화

한국금융 70년의 key words 2

- 1950년 Bloomfield의 건의서가 은행법, 한국은행법의 초안
- Gurley, Shaw, Patrick의 권고와 1965년 금융개혁
- AFC와 IMF의 구제금융
- GFC와 한미 통화스왑
- ?

한국금융의 legacy

- 고성장시대에 산업=주인, 금융=노예의 관계가 정립
 -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아닌 정부가 '금융' 도구를 이용한 자원의 동원
 - 자본시장의 발전이 지체, 은행이 금융업을 주도
 - 해외자본의 유치 시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FDI 보다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
→ moral hazard를 야기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 생존, 복구, 고성장, 균형성장, 복지, 신산업육성 등 시대상황에 따른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폐기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

한국금융의 취약성: best practice를 하기 어려운 법체계

The Fit and Proper test for approved persons

Ch.2 Main assessment criteria FSA Handbook 2004.1

2.1.1

G

01.02.04/002

In determining a *person's* 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the *FSA* will have regard to matt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set out in ■ FIT 2.1.3 G which may have arisen either in the *United Kingdom* or elsewhere. The *FSA* should be informed of these matters (see ■ SUP 10.13.16 R), but will consider the circumstance only where relevant to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example, under ■ FIT 2.1.3G(1), conviction for a criminal offence will not automatically mean an application will be rejected. The *FSA* treats each candidate's application on a case-by-case basis,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offence, the explanation offered by the convicted *person*, the relevance of the offence to the proposed role, the passage of time since the offence was committed and evidence of the individual's rehabilitation

2.2.1

G

01.12.01/001

In determining a *person's* competence and capability, the *FSA* will have regard to matt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1) whether the *person* satisfies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FSA's* Training and Competence sourcebook (*TC*) in relation to the *controlled function* the *person* performs or is intended to perform;
- (2) whether the *person* has demonstrated by experience and training that the *person* is able, or will be able if approved, to perform the *controlled function*.

FYI 영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 적격성 심사제도: 대상자의 1) 정직성, 진실성 및 평판 2) 능력과 역량 3) 재무건전성의 세 기준으로 수행
 - 정직성, 진실성 및 평판은 민형사상 위법행위 연루,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조사, 금융회사로부터 해고, 사임 또는 사임요구의 사실여부, 면허취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경력여부 등 매우 광범위한 범주에서 적용되나,
 - **범죄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심사대상을 열거한 13개 항목에만 국한하지도 않을 것이며, 동 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안별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 이는 감독당국(FCA)이 제도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서류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심사지원자와 면담도 병행
 - **능력과 역량, 재무건전성의 기준도 심사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 지 여부 검증에 주력**
 - 2007.4월-2012.12월 기간 동안 심사대상자가 신청한 227,000건 가운데 30건이 기각되었으며 신청건수의 3%에 해당하는 7,000건이 신청을 철회

FYI International practice

- 영국 FCA의 적격성 심사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2009.12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IOSC) 산하 신흥시장위원회 최종보고서(Fit and Proper Assessment – Best Practice Final Report)로 채택
 - 특히 동 보고서는 비적격사유로서 세가지 기준에 따른 8개 항목을 열거
 - OECD도 금융회사 이사진의 적격요건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함께 전문성을 강조 (OECD Guidelines on Insurer Governance, 2011)

FYI 한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 금융소비자, 투자자 뿐 아니라 예금보험기금까지 거덜나게 했던 저축은행사태에 대응하여 뒤늦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였음
 - 2010.9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심사제도가 최초로 도입
 - 2012.3월 금융당국은 미래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에서 2006년 발생한 채무불이행은 동 제도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적격판정을 내렸으나 2012.5월 동 저축은행은 퇴출
 - 미래저축은행 대주주는 자신이 또다른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채무보증에 관련하여 2006.1월 1심 판결 이후 2011.3월 채무불이행자로 확정 판결되었음

미흡한 한국금융의 질적 성장

- 위험과 보상의 프로파일을 제대로 식별하는 역량이 부족
 -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를 해소하는 screening devise가 취약
 - 부채상환청구권, 보증
- 글로벌금융세계의 주변부에 위치
 - 국제화폐로서 원화의 비교환성이 금융산업발전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작용
 - 외환당국이 외환에 대한 최종보험자역할을 수행
 -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국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함

FYI 외환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외환당국이 외환의 최종보험자

- 환헤징, 차입 등 민간부문의 합리적 행태가 경제전체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동반

↔

- 사적 차원에서 외환거래에 따르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외환건전성을 담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외환거래법과 상충
 - 한국이 IMF WEO에서는 선진국, IMF GFSR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

→ 여전히 한국은 글로벌금융세계의 주변국

GFC와 뒤이은 저성장이 한국금융에 남긴 문제들

- 위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금융개혁과 금융회사의 활동을 제약하는 금융규제가 뒤섞임
- 금융의 사회적 책임 부상
- 자신감의 상실
 - 금융글로벌화는 collateral benefits 대신 collateral damage를 초래

금융의 속성

금융의 속성에 비친 한국금융

회고와 반성

한국금융의 회고와 반성

- 대내외 여건이 금융발전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시장실패에 따른 시장불신이 팽배
- 금융의 속성을 고려할 때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지가 더 중요
- 원칙자유, 예외규제의 네거티브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
 - 금융개혁1, 금융개혁2, 금융개혁3,...금융개혁N, ...